

# 평창군읍·면종합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03. 05(토)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5. 3. 22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05. 3. 23(수) 제12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5.3.23)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환경복지과장 허해성)

가. 제안이유

- 평창군 읍·면 복지회관의 신축과 위치변경에 따라 조례 제2조 "별표" 내용의 회관명 및 위치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【별표 1】의 읍·면 종합복지회관 위치를 정비

회 관 명	위 치	
	개 정 전	개 정 후
봉평면 종합복지회관	창동리 344-1번지	창동리 344, 344-5번지
용평면 종합복지회관	장평리 산144, 145번지	장평리 374-2, 374-3, 380번지
방림면 종합복지회관	계촌리 1410-4번지	계촌리 1410-1, 1410-4, 1410-12번지
미탄면 종합복지회관	창리 618-1, 614-1번지	창 리 607-1, 608, 614-1, 617, 618, 618-1, 618-2번지
도암면 종합복지회관	황계리 335-3(도암면 청사중일부, 324-1번지)	황계리 324-1, 324-18, 324-20, 335번지

### **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**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 조례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평창군 읍·면종합 복지회관의 피로연장, 목욕탕등의 신축과 위치변경 등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위치의 정비를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로써
  
-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
  - 봉평면 종합복지회관은 면사무소 지번 정정과 피로연장 주소지를 추가하는 내용이며
  - 용평면 종합복지회관은 신축된 지번으로 위치를 변경 하였고
  - 방림면 종합복지회관은 피로연장 번지를 추가하였고
  - 미탄면 종합복지회관은 피로연장 번지와 면사무소 번지를 추가하였고
  - 도암면 종합복지회관은 면사무소 번지를 추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
  
-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**

**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**

**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